제 157 호

행 정 명 령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BDS 캠페인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을 박탈하도록 뉴욕주 국 및 청에 지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요하고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뉴욕주와 이스라엘은 특별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져온 문화적 유대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의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불매운동 관련 전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2005 년, 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파들이 팔레스타인 BDS 국가위원회가 조직한 반 이스라엘 불매운동, 투자회수 및 제재(BDS) 캠페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뉴욕주는 BDS 캠페인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지합니다;

뉴욕주는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BDS 캠페인을 조장하려는 자체 투자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I. 정의

A. "해당 뉴욕주 기관"이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과 뉴저지 항만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의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사, 공공당국과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 "반 이스라엘 불매운동, 투자회수, 또는 제재 활동"이란 이스라엘 정부에게 강제하거나 이스라엘 정부에게 정책 입장을 알릴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또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경제적 위해를 가하고 또는 이들과의 상업 관계를 제한하려는 어떤 활동에 가담했거나 사람들을 그런 활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커미셔너"란 뉴욕총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커미셔너를 의미합니다.

II. BDS 자산의 공개 목록

행정명령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 커미셔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사용하여 모기업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반 이스라엘 불매운동, 투자회수 또는

제재 활동에 참가한다고 생각되는 기관 및 기업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 명단이 작성되면 총무국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B. 커미셔너는 180 일마다 이 명단을 업데이트합니다.

C. 커미셔너는 어떤 기관 및 기업을 명단에 올리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기업에게 명단에 포함시킬 생각임을 서면 통지하고, 해당 기관 또는 기업에게 모기업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반 이스라엘 불매운동, 투자회수 또는 제재 활동에 사실상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90 일 동안 제공합니다.

D. 위 조항의 Section II(C)에 따라 커미셔너가 모기업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반 이스라엘 불매운동, 투자회수 또는 제재 활동에 사실상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판단을 내릴 경우, 커미셔너는 명단에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 커미셔너의 명단에 포함된 기관이나 기업은 커미셔너에게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모기업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반 이스라엘 불매운동, 투자회수 또는 제재 활동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서면 증거로 제시하여 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가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판단을 내릴 경우 커미셔너는 위 Section II(B)에 따라 다음 기회에 명단에서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을 삭제합니다.

III. 일부 국채의 회수

A. 이와 관련된 모든 뉴욕주 기관은 위 Section II 에 따라 커미셔너의 명단에 포함된 기관이나 기업에 투자한 돈과 자산을 회수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B. 본 행정명령은 돈과 자산의 다소 성급하거나 또는 경솔한 회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련된 뉴욕주 기관은 본 행정명령 발효 후 1 년 이내에 위 Section III(A)의 지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IV. BDS 자산에 대한 추후 투자 불가

A. 위 Section II 에 따라 향후 관련된 어떤 뉴욕주 기관도 커미셔너의 명단에 포함된 기관이나 기업에 돈이나 자산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본 명령은 즉각 발효되고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천십육년 유월 오일 올버니시에서 본인 자필과

뉴욕주 옥새에 의거 지시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

Korean